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9. 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6월 2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6월 24일)  
상정, 심사, 보류  
제1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9월 2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이준범

### 가. 제안이유

외래 관광객 2,000만 명 시대를 대비, 지속가능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 :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(안 제3조)

- 3)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  - 마포구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 (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)
  -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익금
  -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
- 4)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
  - 구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
  -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·관리비
  -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
- 5)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  -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
- 6)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동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하여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시 발생하는 세입, 세출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의 예산은 특성상 관광객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광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 조성 후 기금보다는 예산 당해 연도 처리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는 특별회계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. 4. 23. ~ 5. 13.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가.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·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

나. 안 제3조에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

다. 안 제4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함

-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(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)
-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 수익금
-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
- 서울특별시 및 국가에서 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
-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

라. 안 제5조에서는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규정함

- 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
-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·관리비
-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
-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
-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
바. 안 제6조에서는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

사. 안 제7조에서는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함

○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안은 2015. 6. 24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9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과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

에 대한 조례가 결정 된 이후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」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, 이번 회기에 2015.3.18. 합정3구역 기부채납시설 활용방안으로 마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『마포 관광진흥센터 설치·운영계획』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.

- 동 조례안은 그 간 문화관광과에서 마포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중·장기적 계획인 「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(4개년 : 2015~2018)」을 수립하여 2015. 7. 10.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, 마포구와 MBC가 공동 추진하는 상암동 「DMC 문화축제계획」 설명보고회 개최는 물론 2015. 9. 3.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마포구 관광업계 관련인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포관광 조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마포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에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안내소 설치·운영과 위탁관련 세부적인 기준과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개정됨과 동시에 동 조례도 제정되어야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, 앞으로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구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.
-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의 재원을 총당하는 관광사업 특별회계(5년 간)를 보면 세입은 약 19억 5천만 원이고 세출은 약 16억 5천만 원으로 약 3억 원의 순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나,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합정3구역 및 상암DMC 시설 사용료는 월임대료에 따른 수입으로 예상수입을 추계할 수 있으나,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 약 1,900만원은 문화

관광과에서 지난 4. 1. ~ 6. 5. 까지 실시한 ‘제1회 마포구 관광기념품 공모전’에서 37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4작품(우수 2, 장려 2)이 선정되었으나, 실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, 마포구 특산품인 관광기념품 수입금으로 1,9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 등 비용 추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에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함께 마포관광기념품 개발 등 세입방 안도 강구하여 자원부족으로 마포관광산업활성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성공적인 마포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